의안번호	제 767 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767 제출연월일: 2021년 6월 30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고,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『충청북도 공인조례』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안 제17조 띄어쓰기 반영
- 별지 제2호서식의 관인→공인으로 정정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- 6.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 중 "처리 결과"를 "처리결과"로 한다.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전자이미지공인대장

공인 명칭					
종류	[] 청인	[] 직인	[] 특수 <mark>공인</mark>		
[] 등록 [] 재등록	전자이미지공인 인영	등록일(재등록일)	년 월	일	
		등록(재등록) 사유			
		관리부서			
		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(부서) 현황			
	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<mark>공인</mark> 의 인영	사용 기관(부서)	시스템 명칭	통보일	최초 사용일
		비고			
폐기	전자이미지공인 인영	폐기일	년 월	월 일	
		폐기 사유			
		폐기한 사람	소속: 직급:	성명:	
		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(부서)에 대한 조치			
		사용 기관(부서)	시스템 명칭	통보일	최종 사용일

< 작성 방법 >

- 1.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[] 등록란에 ∨표를, 재등록하는 때에는 [] 재등록란에 ∨표를 한다.
- 2.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
- 3.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<mark>공인</mark>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

210mm×297mm(백상지 150g/m²)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공인의 사고 보고 등) 공	제17조(공인의 사고 보고 등)
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, 분	
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	
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	
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	
공인명, 사고발생일시, 장소, 사	
고내용, 사고후의 <u>처리 결과</u> 등	<u>처리결과</u>
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	
제출하여야 한다.	,

관련법령 발췌

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제4절 관인의 관리

제40조(공인)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